

충청북도 공고 제2026-1259호

☐2026년 충청북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☐

충청북도는 도민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(법령, 제도, 규정 등)을 개선하기 위해 ☐2026년 충청북도 민생규제 개선과제☐를 공모합니다. 일상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으신 도민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6년 9월 1일

충청북도지사

☐ 공모 개요

- 명칭 : ☐2026년 충청북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☐
- 기간 : 2026. 9. 1.(화) ~ 9. 30.(수)
- 자격 : 충청북도 도민 누구나
- 주제 : 민생규제 개선과제 ※ 다수의 제안서 제출 가능

【 '26년 민생규제 개선 공모분야 및 과제 】

분야	세부내용(예시)
도민복지 · 생활불편	▶ 출산, 육아, 저소득층,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복지 규제 개선 ▶ 행정, 교통, 주택, 교육, 의료, 안전 등 일상생활 속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
일자리 · 취업	▶ 청년·경력 단절자·노인 등의 취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
소상공인 · 중소기업	▶ 전통시장, 소상공인, 중소기업, 자영업자 등의 분야에서 불합리한 규제
경제 · 산업	▶ 지역 경제, 서비스 산업(콘텐츠, 관광, 의료 등), 신산업(AI, 드론, 반도체 등) 관련 각종 불합리한 규제

☐ 공모 방법

- 제출 서식 : 도 · 시군 홈페이지 게시(분량제한 없음)
- 제출 방법 : 전자우편(hyukism@korea.kr) 접수
- ※ 문의 :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(☎ 220-2322)

□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
○ 선정기준 : 창의성(30%), 실현 가능성(30%), 효과성(40%)

심사 기준	세부 내용	비중
창 의 성	과제 내용의 참신성, 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등	30%
실현 가능성	과제 내용의 구체성, 집행 가능성, 타당성 등	30%
효과성	목적 달성 가능성, 과제 해결시 유용성, 타 분야 파급효과 등	40%

※ 단순 불편·불만 민원, 지원금(보조금) 확대 요청 등 공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은
요건심사 결과 불채택될 수 있음.

○ 시상규모 : 8건(최우수 1, 우수 3, 장려 4)

○ 시 상 금 : 총 130만원

※ 최우수(1명, 30만원), 우수(3명, 각 20만원), 장려(4명, 각 10만원)

○ 발 표 일 : 2026년 10월 중

※ 우수과제는 개별 통보 및 도 홈페이지 게시

□기 타

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② 타 기관에서
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③ 과제 공모시 반드시
게시된 신청서에 작성하여야 함

※ 1.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

2. 시상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당선작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

3. 우수과제 중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 선정

○ 문 의 처 : 충청북도 법무혁신담당관 (☎043-220-2322)

※ 첨부 : 응모신청서, 행정규제 관련법령

참고		행정규제 기본 법령 규정
----	--	---------------

	《 행정규제 기본 법령규정 》	
--	------------------	--

□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(정의) 제1항 제1호

○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(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·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.

□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(행정규제의 범위) 제1항 제1호~제4호

1. 허가·인가·특허·면허·승인·지정·인정·시험·검사·검정·확인·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

2. 허가취소·영업정지·등록말소·시정명령·확인·조사·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

3. 고용의무·신고의무·등록의무·보고의무·공급의무·출자금지·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

4.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(사실행위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
□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(적용범위) 제2항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

2. 형사(刑事), 행형(行刑)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

2의2. 과징금,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3.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정보·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

4. 「병역법」, 「통합방위법」, 「예비군법」, 「민방위기본법」,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징집·소집·동원·훈련에 관한 사항

5. 군사시설,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

6. 조세(租稅)의 종목·세율·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

□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(포상) 제11조

도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개인, 기업 및 단체에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.